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11.6]
[대통령령 제24162호,
2012.11.6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의 지정과 관련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포함시키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및 축산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적 집행을 도모하며, 도축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닭·오리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도축검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 1인당 검사가능 도축 두수 조정을 2년간 추가로

유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416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발급에 관한 권한을”을 “발급과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4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명째부터의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닭(제3호가목에 따라 닭의 기준을 적용받는 가금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업무량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는 3만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49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 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12.11.6> [시행일]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

정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날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만원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만원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만원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만원
3) 그 밖의 영업자		300만원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의 영업자		500만원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만원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200만원
4) 그 밖의 영업자		50만원

| 축산법령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0만원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700만원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1) 도축업의 영업자		300만원
2)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200만원
3)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200만원
4)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100만원
자.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20만원
차.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0만원
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만원
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만원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만원
파.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6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만원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만원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만원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만원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00만원
하. 법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역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7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만원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20만원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만원
더.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러.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만원
머.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만원
버.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만원
서.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50만원

